2018 ARPS 교재 연례개정

1권. 은퇴설계의 New Paradigm

| 교재 | 수정 전 | 수정 후 | 비고 |
|---|---|---|---|
| 17p<br>그림 1-1 | 그림 1-1<br>우리나라 가구 자산현황 | [첨부 1] 참조<br>연령대별 가구당 자산보유 현황 | 표<br>수정 |
| 18p<br>상 6 하단 | - |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통계청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중에서 겨우 4.5%가 10억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가구의 68.0%가 3억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가구주연령대별로 자산보유액을 살펴보더라도, 가장 자산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50대 가구의 평균자산도 4억 4,302만원에 불과하다.<br>이런 상황에서 노후자금으로 10억원이나 20억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달성할 수 없는 그야말로 남의 나라 얘기일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은퇴설계는 대다수의 사람이 달성하기 어려운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기보다는 각종 연금제도와 연금상품을 활용해 은퇴 후 소득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내용<br>추가 |
| 26p<br>상 4~8 | ~~2010년 인구조사에 ~ 것을 알 수 있다.~~(삭제) | 2015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자가 무려 3,159명으로 2010년 1,835명에 비해 1,324명(72.2%)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대국 일본의 경우 1990년 이후 100세 이상 고령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더니,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내용<br>수정 |
| 26p<br>그림 1-3 | 그림 1-3<br>한국인의 100세 이상 고령자 추이 | [첨부2] 참조 | 그림<br>수정 |
| 29p | ~~한국인 남성의 ~ 14년이나~~ | 한국인 남성의 평균수명은 1970년 | 내용 |

| | | | |
|---|---|---|---|
| 하 3 | ~~늘어났다.~~(삭제) | 58.7세에서 2016년 79.3세로 46년 동안 20.6세나 늘어났다. 여성의 경우도 같은 기간 65.8세에서 85.4세로 19.6세가 늘어났다. | 수정 |
| 29p<br>그림 1-5 | 그림 1-5<br>한국인의 연도별 평균수명 | [첨부3] 참조 | 그림 수정 |
| 30p<br>상 6~9 | ~~2011년 통계청이 발표한~ 여자는 86.6세이다.~~(삭제) | 통계청이 발표한 생명표에 따르면,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1970년 12.7년에서 2016년 22.5년으로 10년이 가까이 늘어났다. 60세 여자의 기대여명도 같은 기간 18.4년에서 27.2년으로 9년 가까이 늘어났다. 현재 나이와 기대연령을 합치면 60세 남자는 평균적으로 82.5세, 60세 여자는 87.2세까지 산다는 계산이 나온다. | 내용 수정 |
| 30p<br>그림 1-6 | 그림 1-6<br>65세 이상 고령자의 기대여명 | [첨부4] 참조 | 그림 수정 |
| 30p<br>하 3 |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 숨을 거둔다는 얘기다.~~(삭제) | 2016년에 출생한 신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자는 79.3세, 여자는 85.4세이다. 하지만 이들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유병상태를 보내는 기간은 남자는 14.6년, 여자는 20.2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병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남자는 64.7세(기대수명 중 81.6%), 여자는 65.2년(기대수명 중 76.4%)에 불과하다. 아울러 2016년 40세 생존자의 경우 유병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남자는 27.5세, 여자는 28.0세로 전망된다. | 내용 수정 |
| 33p<br>하 5 ~6 | 여자(84세)가 남자(77세)보다 7년 가까이 더 살고, | 여자(85.4세)가 남자(79.3세)보다 6년 가까이 더 살고, | 내용 수정 |
| 41p<br>하 6 | ~~통계청이 2015년 발표한 ~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삭제) |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는 현재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넘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2017년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평균자산 규모는 4억4,302억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은 60세 이상 가구로 평균자산 | 내용 수정 |

| | | | |
|---|---|---|---|
| | | 이 3억6,648억원으로 나타났다. 40대 가구의 자산규모는 60대 이상 가구와 유사하지만, 20~30대 가구의 자산은 50~60대 가구의 자산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베이비붐세대는 그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도 크기 때문에 금융권이 관심을 가지 않을 수 없다. | |
| 42p<br>그림 1-9 | 그림 1-9<br>한국의 연령대별 가계자산 현황 | [첨부5] 참조 | 그림 수정 |
| 47p<br>상 7 하단 | ~소용되는 셈이다.<br>(내용추가) | 고령자 증감현황을 다시 연령대별로 세분해 보면, 전체 고령자에서 65세에서 70세 사이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41.0%에서 2017년 32.4%로 감소했고, 2060년에는 19.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8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고령자에서 80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3.8%에서 2017년에는 21.7%로 상승했고, 2060년에는 44.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내용 추가 |
| 47p<br>그림 1-11 | 그림 1-11<br>연령계층별 고령인구 | [첨부6] 참조 | 그림 수정 |
| 53p<br>상 8~9 | ~~우리나라도 ~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삭제) | 우리나라도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내용 수정 |
| 58p<br>하 3 | ~~2008년만 해도 국민연금 ~ 630조원이나 늘어났다.~~(삭제) | 2008년 당시만해도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친 국내 연금자산 규모는 360조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그 비중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자산 규모는 235조원에서 558조원으로 137%(323조원) 증가한데 반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자산 규모는 123조원에서 457조원으로 272%(334조원)나 증가했다. 사적연금 자산의 성장 속도가 국민연금 | 내용 수정 |

| | | | |
|---|---|---|---|
| | | 보다 해 2배나 빠른 셈이다. | |
| 59p<br>표 1-4 | 표 1-4<br>연금 자산의 증가 추이 | [첨부7] 참조 | 표<br>수정 |
| 96p<br>상 7 |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다.<br>(내용추가)<br>이 같은 장점이 |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경력단절 전업주부까지 추후납부 대상이 확대되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이다. 따라서 이들은 별도로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았으니 나중에 추후납부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납부예외기간뿐만 아니라 적용제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서도 추후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 내용<br>추가 |
| 96p<br>상 11~15 | ~~또한 과거에는 납부예외 ~ 신청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삭제) | 그리고 전업주부의 추후납부가 허용된 다음 추후납부 신청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추납신청자가 9만명을 넘어서더니, 2017년에는 13만 8천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 내용<br>수정 |
| 97p<br>상 4 | 2012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8%이다. | 2018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5% 이다. | 내용<br>수정 |
| 97p<br>상 7~10 | ~~2007년만 해도 겨우 ~ 넘어섰다.~~(삭제) | 2013년 6만9천건이 조금 안되던 반납신청 건은 2015년에는 15만건을 넘어서더니 2016년에는 13만건을 넘어섰다. | 내용<br>수정 |
| 97p<br>그림 2-7 | 그림 2-7<br>국민연금 반납·추납자 추이 | [첨부8] 참조 | 그림<br>수정 |
| 105p<br>상 1 ~<br>106p<br>상 12 | ~~아내가 남편보다 더 산다면, ~ 24만원밖에 되지 않는다.~~(삭제) | 아내가 남편보다 더 산다면, 노후준비와 자산관리도 오래 사는 아내에 맞춰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생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 내 용<br>수정 |

| | | | |
|---|---|---|---|
| | | 국민연금을 살펴보자. 2017 년 11 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자는 438 만명이다. 하지만 이 중 여성 수령자는 183 만명으로 41.7%에 불과하다. 여성 국민연금 수령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제대로 된 연금을 받지 못하는 특례노령연금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다음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 정작 20 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제대로 된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채 3 만명이 안 된다. 이는 여성 노령연금 수령자의 2.5%에 불과한 수치다.<br>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 년 이상인 사람은 월평균 89 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가입기간이 10 년 이상 20 년 미만인 사람은 노령연금으로 월평균 39 만원만 수령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 년에서 10 년 사이로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겨우 월 평균 21 만원의 연금을 받을 뿐이다. | |
| 106p<br>그림 2-12 | 그림 2-12<br>여성 국민연금 수령자 중 0.7%만 완전노령연금 수령 | [첨부 9] 참조 | 그림 수정 |
| 142P<br>상 1 ~<br>144p<br>하 6 | 03 지역가입자 전환과 건강보험료 관리 ~ (파란색 박스) 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것 | [첨부 10] 참조 | 내용 수정 |
| 145p<br>하 5 | ~~구직급여로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 240일 동안 구직 연금을 받을 수 있다.~~<br>(중간 박스 포함 삭제) |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의 급여일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다만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상한선은 하루 6만원이고,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이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이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하한선은 54,216원이 된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54,216원보다 적으면 하루치 구직급여로 46,584원을 지급한다. 구직급여 수령기간은 이직 당시 연령과 | 내용 수정 |

| | | | |
|---|---|---|---|
| |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단 90일에서 최장 240일 동안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40일 동안 수령할 수 있다.<br>(가운데 박스 제거) | |
| 168p<br>상 5~6 | ~~그래서 건강보험은 ~ 제공하고 있다.~~(삭제) |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 내용 수정 |
| 168p<br>상 9~10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 장점이 있다.~~(삭제) | | 내용 삭제 |
| 168p<br>표 3-10 | 표 3-10<br>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 [첨부11] 참조 | 표 내용 수정·삭제 |
| 170p<br>상 4 ~<br>172p<br>상 5 | ~~신청절차도 간단한 편이다. ~ 장기요양급여는 제한될 수 있다.~~(삭제) | [첨부12] 참조 | 내용 수정<br>표 수정 |
| 172p<br>상 12 | ~~지난해 담배값이 ~ 분이 많다.~~(삭제) | | 내용 삭제 |

(첨부1)

[그림1-1] 연령대별 가구당 자산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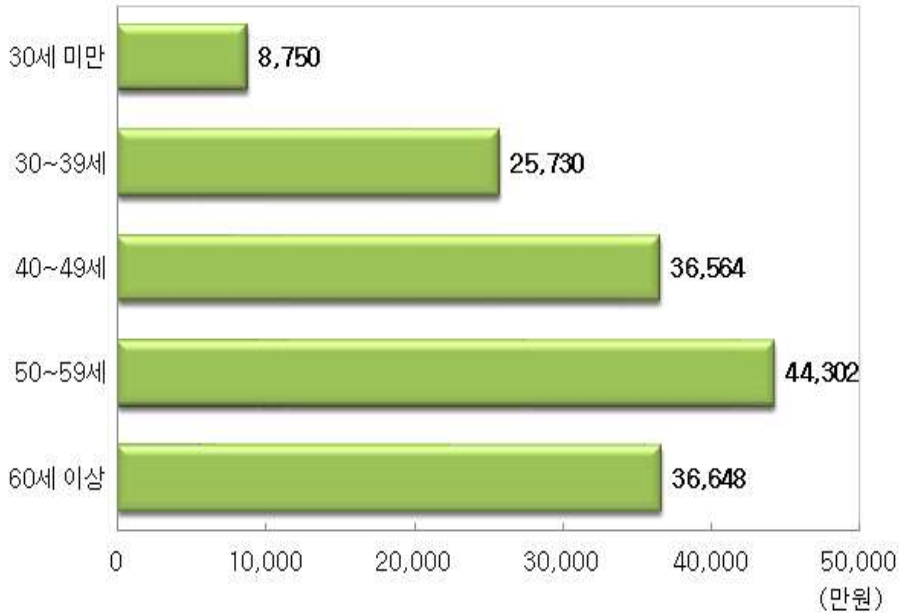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첨부2)**

[그림 1-3] 한국의 100세이상 고령자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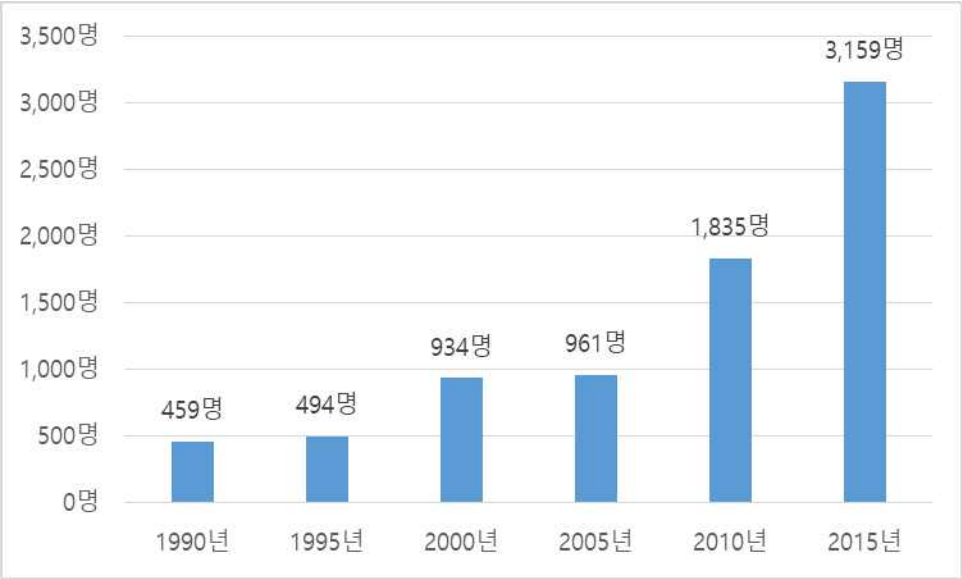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100세 이상 고령자 집계결과 (각 연도)

**(첨부3)**

[그림 1-5] 한국인의 연도별 평균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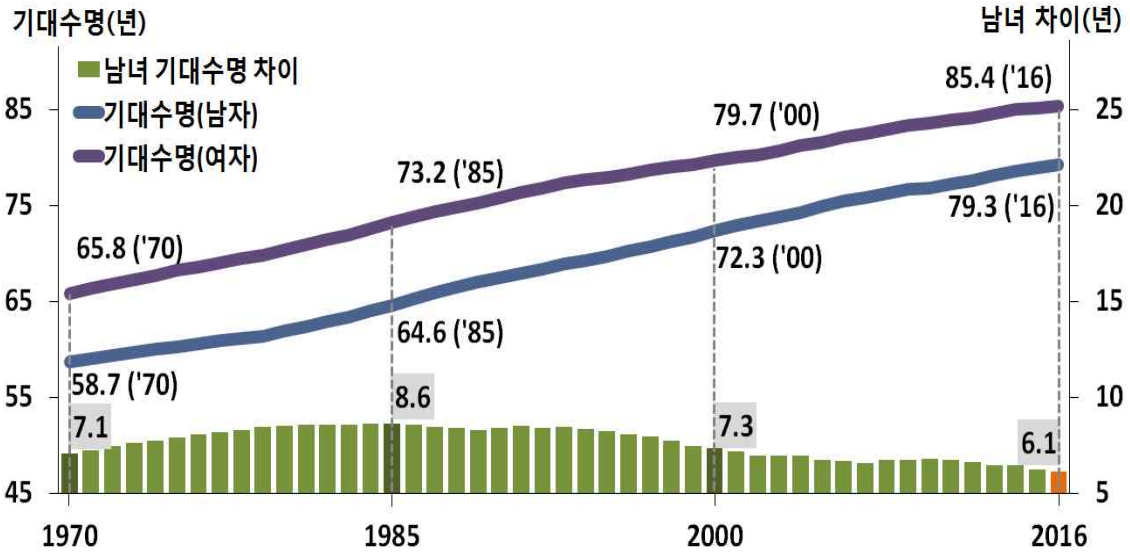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2016년 생명표

**(첨부4)**

[그림 1-6] 성・연령별 기대여명 (1970년,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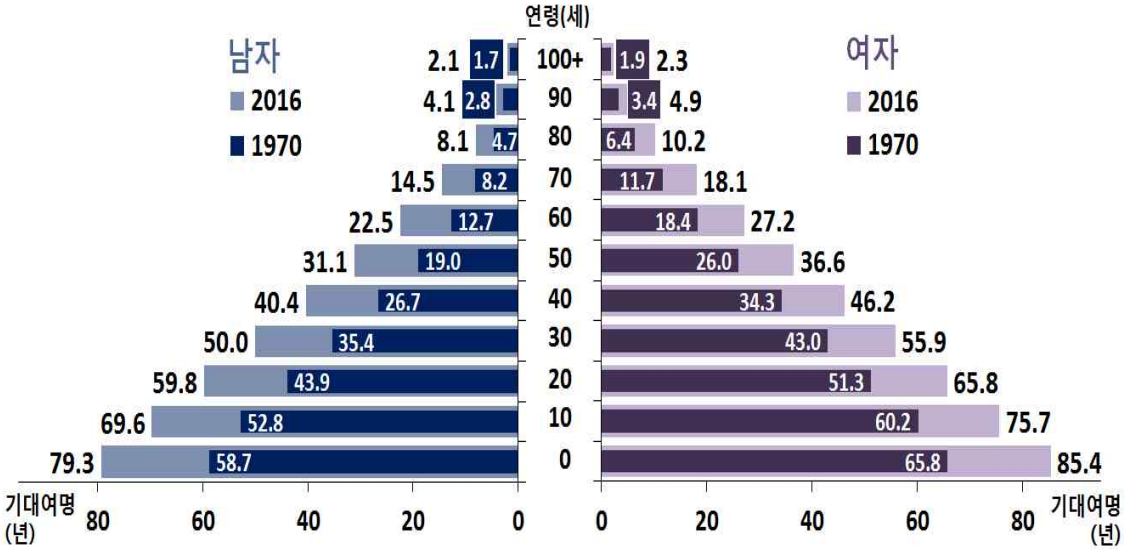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2016년 생명표

**(첨부5)**

[그림 1-9] 연령대별 자산규모 및 현황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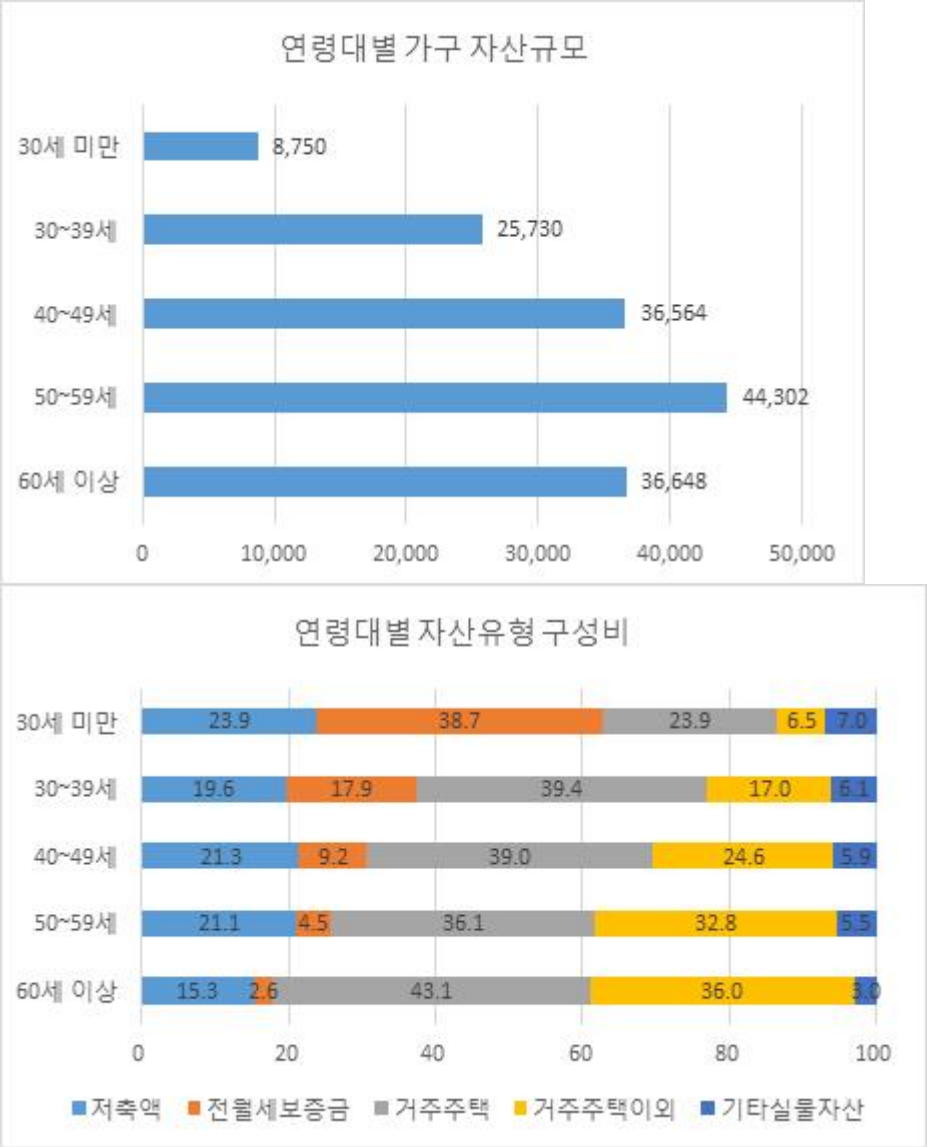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첨부6)**

[그림 1-11] 고령자의 연령대별 구성비와 인구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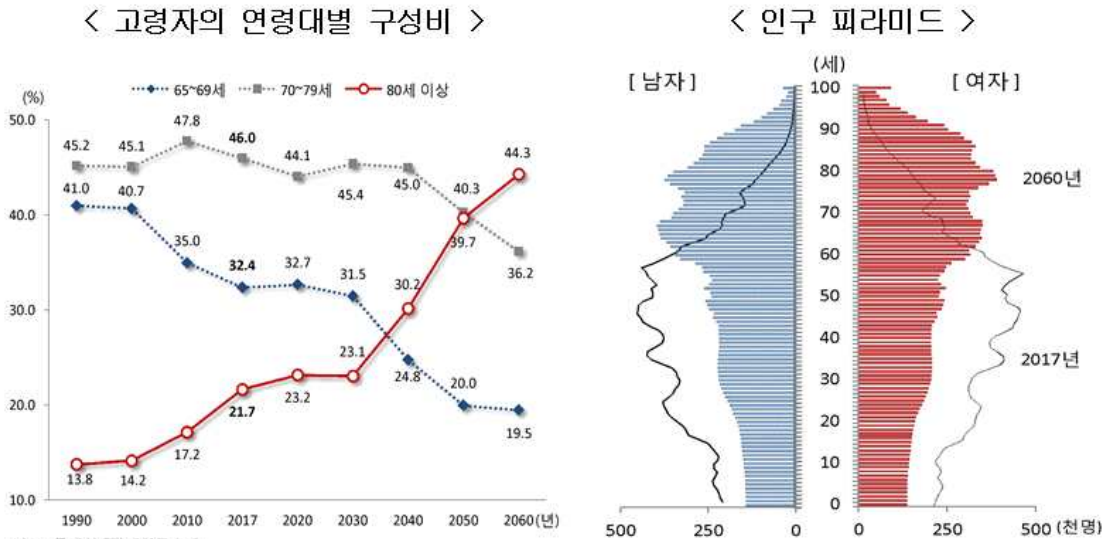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2017년 고령자통계

**(첨부7)**

[표 1-4] 국내 연금자산 증가추이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국민연금 | **235** | **278** | **324** | **349** | **392** | **427** | **470** | **512** | **558** |
| 사적연금 | **123** | **150** | **187** | **227** | **282** | **329** | **377** | **419** | **457** |
| 퇴직연금 | 6 | 14 | 29 | 50 | 67 | 84 | 107 | 126 | 147 |
| 세제적격 | 46 | 52 | 60 | 68 | 78 | 90 | 101 | 109 | 118 |
| 세제비적격 | 71 | 84 | 98 | 109 | 137 | 155 | 169 | 184 | 192 |

출처 : 금융감독원

**(첨부8)**

[그림 2-7] 국민연금 반납 추납 신청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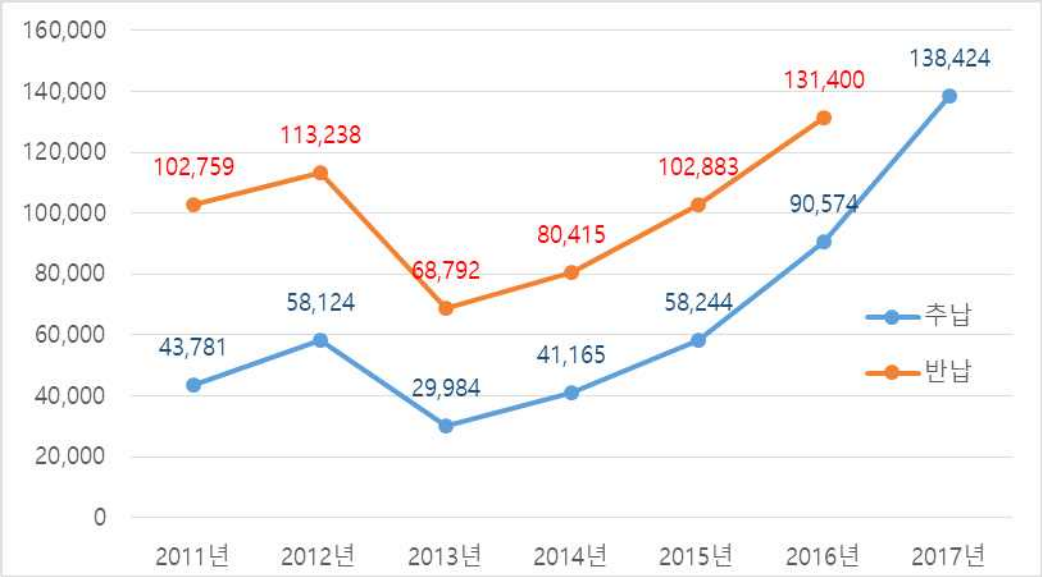


자료 : 국민연금공단

**(첨부9)**

[그림 2-12] 여성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및 노령연금 종류별 월평균 수령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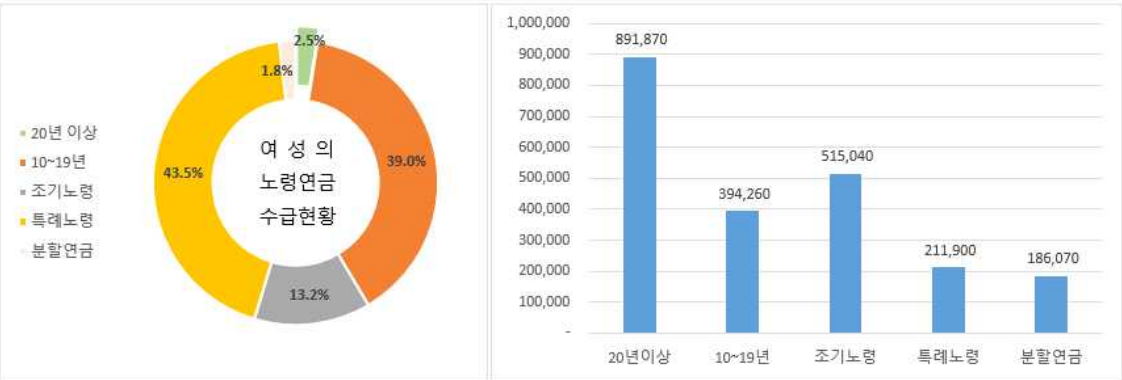


출처 : 국민연금공단 (2017년 11월)

**(첨부10)**

**03. 지역가입자 전환과 건강보험료 관리**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도 건강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간단히 월 급여에 건강보험요율만 곱하면 매달 납부할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다. 보험요율은 6.24%인데, 절반은 회사에서 납부하므로 근로자는 3.12%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도 자동차와 보유재산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부담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먼저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살핀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이 주는 혜택은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그렇다고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뿐 아니라 사위나 며느리도 포함된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형제•자매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

다만 퇴직자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먼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사업소득 이외 다른 과세소득을 합산해 연간 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 90% 고려하면 3억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과표가 5억4,000만원(시가 11억원 상당)이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재산가 또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후 36개월 동안은 퇴직하기 전 직장에서 본인이 납부했던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닐 때와 마찬가지로 부양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 다만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2018년 7월부터는 여러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해 1년 이상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이직이 잦은 단기간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기 수월해졌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다음 처음 받은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한다. 그리고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한 다음 최초로 고지 받은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상실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다음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림 3-1】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더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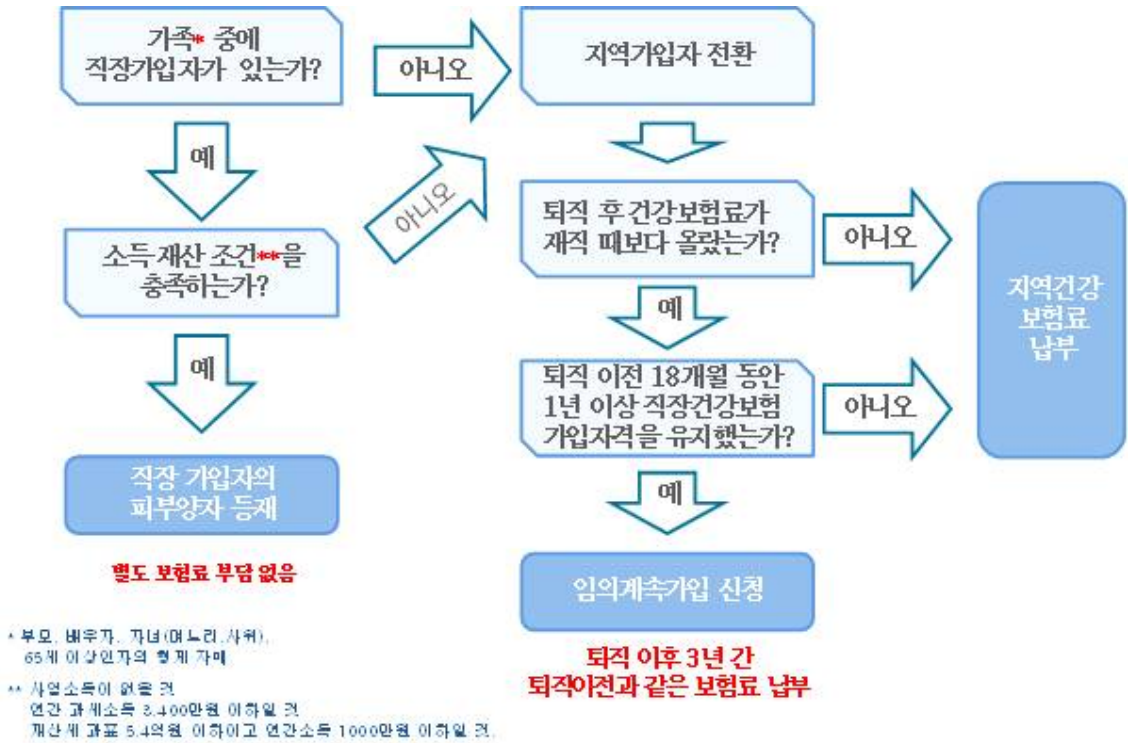


고령의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보험료를 경감 받는다. 보험료를 경감 받으려면 세대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고, 종합소득이 36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험료 경감률은 과표재산의 크기와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난다. 세대원 중 만65세 이상부터 74세 이하 고령자가 있는 경우부터 살펴보면, 과표재산이 6,000만원 이하면 30%, 6000만원 초과 9000만원 이하면 20%, 9000만원 초과 13,500만원 이하면 10%를 경감해 준다. 세대원 중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경우에는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이면 보험료를 30%를 경감해 준다.

【표3-4】건강보험료 경감대상이 되는 고령 지역가입자

| 연 령 | 65세 이상 고령자 | | | 70세 이상 고령자 |
|---|---|---|---|---|
| 경 감 률 | 30% | 20% | 10% | 30% |
| 소득금액 | 360만원 이하 | | | 360만원 이하 |
| 과표재산 | 6,000만원 이하 | 6000~9000만원 | 9,000~13,500만원 | 13,500만원 이하 |

홀로 사는 여성도 보험료 경감혜택이 주어진다. 만 5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으로 구성된 단독세대인 경우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세대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료 경감혜택이 주어진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직계비속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없지만, 이미 출가한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자는 종합소득이 연간 360만원 이하이고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지역건강보험료를 보험료를 경감받는다. 경감률은 장애등급(상이등급)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장애 1~2등급은 30%, 장애 3~4등급(상이

자 3~5등급)은 20%, 장애 5~6등급(상이자 6~7등급)은 10%를 경감 받는다.

【표3-5】지역건강보험료 경감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 경 감 률 | 30% | 20% | 10% |
|---|---|---|---|
| 장애등급 | 1~2등급 | 3~4등급<br>(상이자 3~5등급) | 5~6등급<br>(상이자 6~7등급) |
| 소득금액 | 360만원 이하 | | |
| 과표재산 | 13,500만원 이하 | | |

**(첨부11)**

[표 3-10]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 구분 | 대상자 | 검진 주기 | 비용 |
|---|---|---|---|
| 일반 건강검진 | · 가입자 - 제한없음<br>· 피부양자 - 만 40세 이상 | 2년에 1회<br>(비사무직은 1년에 1회) | 무료 |
| 국민 암검진 | · 위암, 유방암, 간암 - 만 40세 이상<br>· 대장암 - 만 50세 이상<br>·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2년 주기<br>· 대장암, 간암 - 1년 주기 | · 수검자 10% 부담<br>· 자궁경부암은 무료 |
| ~~생애전환기 검진~~(삭제) | ~~만 40세, 66세~~(삭제) | - | ~~무료~~(삭제) |

**(첨부12)**

여기서 노인성질환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인데,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이때 본인은 물론 가족, 친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에 의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방문조사가 이뤄진다. 방문조사란, 제출한 신청서를 기반으로 공단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때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가지 영역의 52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산정하다.

[표 3-11] 장기요양인정조사표

| 영역 | 항목 | | |
|---|---|---|---|
| 신체기능 (12항목) | · 옷벗고 입기<br>· 식사하기<br>· 일어나 앉기<br>· 화장실 사용하기 | · 세수하기<br>· 목욕하기<br>· 옮겨앉기<br>· 대변 조절하기 | · 양치질하기<br>· 체위변경하기<br>· 방밖으로 나오기<br>· 소변 조절하기 |
| 인지기능 (7항목) | · 단기 기억장애<br>· 날짜불인지<br>· 장소불인지<br>·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 지시불인지<br>· 상황판단력 감퇴<br>· 의사소통/전달장애 | |
| 행동변화 (14항목) | · 망상<br>· 환청,환각<br>· 슬픈상태,울기도함<br>· 불규칙수면,주야혼돈<br>· 도움에 저항 | ·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br>· 길을 잃음<br>· 폭언,위협행동<br>· 밖으로 나가려함<br>·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 물건 망가트리기<br>· 돈/물건감추기<br>· 부적절한 옷입기<br>· 대/소변 불결행위 |
| 간호처치 (9항목) | · 기관지절개관 간호<br>· 흡인<br>· 산소요법 | · 경관영양<br>· 욕창간호<br>· 압성통증간호 | · 도뇨관리<br>· 장루간호<br>· 투석간호 |
| 재활 (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 관절제한(6항목) | |
| | · 우측상지 · 우측하지<br>· 좌측상지 · 좌측하지 | · 어깨관절 · 팔꿈치관절 · 손목 및 수지관절<br>· 고관절 · 무릎관절 · 발목관절 | |

방문조사결과가 나오면, 등급평가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등을 기초로 하여 신청인의 일상생활자립도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해 등급을 판정한다.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 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의 등급으로 판정한다.

[표 3-12] 노인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br>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br>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br>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br>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br>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br>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인정계획서 등을 송부해주고,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해 주는 급여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뉜다.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 간병을 받는 것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이 있다. 노인요양시설이란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환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시설을 말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신규입소 하려면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등급 3~4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에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을 받기 곤란한 경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규입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 등에서 거주생활을 하면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으로부터 신체활동과 목욕, 일상생활활동 지원을 받는 것을 말한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총 6가지가 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거주지로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개인활동, 정서지원 등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이다. 1~5등급 수급자가 대상이며,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지원한다. 방문간호서비스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

위생사가 수급자 거주지로 직접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투약관리 상담 또는 구강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1~4등급자가 수급대상이다. 방문목욕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가 2인1조로 수급자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목욕차량 또는 이동식욕조를 갖추고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보호하며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단기보호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월 15일 이내로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재가급여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그에 따른 급여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5%만 수급자가 부담한다. 경감대상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7.5%로 줄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이 밖에 복지용구급여와 특별현금급여도 있다. 복지용구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이다. 특별현금급여란 수급자가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